

투자설명서 변경안내

투자설명서 일부 변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.

□ **효력발생일:** 2016년 6월 14일(화)

□ **대상 펀드**

- AB 이머징마켓 증권 투자신탁(채권-재간접형)
- AB 유럽 증권 투자신탁 (채권-재간접형)

□ **투자설명서 변경대비표**

항목	정정사유	정정전	정정후
제 2 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, 나. 투자 제한	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개정사항 반영	<u>라.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</u>	<u>라.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(사모 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)의 집합투자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</u>
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	개정세법 반영	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합니다. <u>다만,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(零)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.</u> 수익자는 투자신탁 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 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.	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이익금(<u>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는 해당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</u>)을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합니다. 수익자는 투자신탁 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. <u>다만,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240조 제1항의 회계처리 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,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(零)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.</u>

집합투자규약 변경안내

집합투자규약 일부 변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.

□ **효력발생일** : 2016년 6월 14일(화)

□ **대상 펀드** :

- AB 이머징마켓 증권 투자신탁(채권-재간접형)
- AB 유럽 증권 투자신탁 (채권-재간접형)

□ **집합투자규약 변경대비표**

항목	정정사유	정정전	정정후
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 제2호	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개정사항 반영	라.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	라.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(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)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
제33조(이익분배) 제1항	개정세법 반영	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. 다만,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 (零)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.	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고,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 (零)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. 1.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 재산의 평가이익 2. 법 제240조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
제43조(신탁계약의 변경) 제4항	문구 정정	④수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공시일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에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. 다만, 제3항 및 신탁계약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(삭제)